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 수 시 장 2023.7.11



여수시 조례 제1898호

붙임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 · 심의 · 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해당국장”을 “국·소·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를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으로, “인사중”을 “인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2조제5항 중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를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앙 및 도”를 “정부 및 전라남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로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의안”을 “안건”으로, “24시간”을 “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자문, 심의, 연구”를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경제국장</u>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u>해당국장</u>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p>③ <u>당연직위원은 4급 이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심의·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u></p> <p><u>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 -- <u>행정안전국장</u>----- ----- ----- ----- ----- ----- ----- ----- <u>국·소·단장</u>-----.</p> <p>③ <u>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u> ----- -- <u>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u> ----- <u>인사 중</u>-----</p>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회는 관련회의때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 · 규칙중에서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

-----.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

⑤ -----.

-----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 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정부 및 전라남도 -----.

3. 다른 조례 ·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 · 규칙으로

<u>고 있는 사항</u>	<u>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 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u>
<u>5.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 래하는 사항</u>	<u><삭 제></u>
<u>6.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7. 행정 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 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8. 유락행위등방지법 제7조의 규 정에 따른 지역요보호자선도 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u><삭 제></u>
<u>9.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0.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지 원 및 보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1.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2. 향토예비군 징집증대 운영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3.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4.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 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u><삭 제></u>

<u>16. 불용 결정된 물품의 치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7.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8.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u>	<u><삭 제></u>
<u>19. 이웃돕기 심의, 생활향상(영세민 없는 마을조성)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0.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1.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 불허민원심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2. 환지심의, 수산진흥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 발전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4.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5. 영세민생활 안정 기금 관리 심의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6. 그밖에 시장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7.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u> --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 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 안건 -----
--- 5일 -----
----- .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4항 -----
--- 자문 -----
----- .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전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
----- 대하여 ----- 관계
공무원 ----- 들을 -----
-----.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

--- 1명-----.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 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심의·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③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정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 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30., 2011. 1. 17.>

③ 삭제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소·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